

# 憲法特別委員會運營規則案

憲法特別委員會

## 1. 議決主文

憲法特別委員會 運營規則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.

## 2. 提案理由

憲法特別委員會規程 第 11 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細部事項을 定하려는 것임.

## 3. 主要骨子

가. 會議의 召集, 意見提出, 會議結果의 公開등에 관한 事項을 定함.

(案第 2 條 내지 第 5 條)

나. 分科委員會의 設置 및 分科委員의 研究課題 分擔에 관한 事項을

定함. (案第 7 條 내지 第 9 條)

다. 小委員會의 設置・運營에 관한 事項을 定함. (案第 10 條)

라. 公聽會 開催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定함(案第 12 條)

## 4. 參考事項

憲法 特別委員會規程(別添)

委員會規則 第 號

## 憲法特別委員會 運營規則案

第 1 條 (目的) 이 規則은 憲法特別委員會 規程 (이하 “規程”이라 한다) 第 11 條의 規定에 의하여 憲法特別委員會 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의 運營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 2 條 (會議의 召集) 規程 第 5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長이 會議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會議日時·場所 및 案件을 明示하여 委員會의 委員에게 書面 또는 口頭로 通知하여야 한다.

第 3 條 (書面에 의한 意見提出) 不得已한 事情으로 會議에 參席하지 못하는 委員은 會議案件에 關한 意見을 書面으로 提出할 수 있다.

第 4 條 (會議結果의 公開) 委員會에서 論議된 事項은 公開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. 다만, 委員會의 議決이 있거나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第 5 條 (會議錄) 委員會는 會議錄을 作成·備置하여야 한다.

第 6 條 (諮問委員의 安배) 規程 第 3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諮問委員을 두는 경우 各界各層의 意見이 高루 反影될 수 있도록 諮問委員을 分野別·地域別로 安배하도록 留意하여야 한다.

**第 7 條 (分科委員會의 設置)** ①規程 第 6 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3 個의 分科委員會를 둔다.

②分科委員會는 擔當研究課題를 考慮하여 適正한 數의 委員으로 構成한다.

③各 分科委員會에는 分科委員長 및 幹事委員 各 1 人을 두며, 分科委員長과 幹事委員은 委員長이 정한다.

④分科委員長은 分科委員會의 業務를 總括하며, 分科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幹事委員이 分科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.

**第 8 條 (分科委員會의 研究課題 分擔)** 分科委員長은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擔當研究課題를 細分하여 研究하게 하기위하여 分科委員別로 擔當研究課題를 分擔하게 할 수 있다.

**第 9 條 (分科委員會의 召集등)** ①分科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의 要求가 있거나 分科委員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 이를 召集한다.

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科委員長이 會議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

③分科委員長은 分科委員會의 會議에서 議決된 事項을 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

④分科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第 2 條 내지 第 5 條의 規定을 準用하는 外에는 分科委員長이 이를 정한다.

**第 10 條 (小委員會의 設置·運營)** ①規程 第 7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

小委員會는 適正한 數의 委員으로 構成한다.

②小委員會에는 小委委員長 및 幹事委員 各 1 人을 두되, 小委委員長과 幹事委員은 委員長이 정한다.

③小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第 2 條 내지 第 5 條, 第 7 條第 4 項 및 第 9 條第 1 項 내지 第 3 項의 規定을 準用하는 外에는 小委員長이 이를 정한다.

第 11 條 ( 意見聽取 ) 規程 第 9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있는 者의 出席을 要請할 때에는 意見聽取 日時・場所 및 聽取事項을 明示하여 書面 또는 口頭로 出席者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.

第 12 條 ( 公聽會 ) 規程 第 9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聽會를 開催하고자 할 때에는 公聽會의 日時, 場所, 案件, 陳述人 기타 公聽會의 開催에 필요한 事項을 關係人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.

## 附 則

이 規則은 委員會議에서 議決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